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대상에 하수 범람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추가〉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0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대상에 하수범람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추가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2025년 8월 27일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대상에 하수범람으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 지역 추가

개정안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상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각 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u> 관할 시·도지사 ¹ 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u> ----- ----- ----- -----.
<신설>	1.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u>
<신설>	2.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u>
<신설>	3. <u>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u>

② ~ ⑥ (생략)	<u>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4조의3¹⁾,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²⁾ 및 제1조의4³⁾에서는 강우시 하수관로 막힘 등으로 인한 하수 범람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 1)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3)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해, 하수의 범람으로 공공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시 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정비침수 현황,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⁵⁾,

우수관로 증설 및 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저류시설 확충 등 하수도 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⁶⁾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총 210개 지역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57개소는 준공되었으며, 153개소는 설계·공사 중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지정	210	21	11	11	10	11	12	12	26	21	38	21	16
준공	57	18	10	10	9	6	1	-	1	1	1	-	-
공사중	45	2	-	1	1	5	7	11	13	2	2	1	-
설계중	108	1	1	-	-	-	4	1	12	18	35	20	1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4)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2013년 2월에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2024년 기준 부산 동래 온천천, 연제구 거제천 등 210개소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그 중 정비대책 시행완료된 지역은 57개소임. 2024년까지 156개소의 중점관리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약 1조 4,800억원이 지원됨(참고자료 참조).

5)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하수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6) 하수관 정비, 펌프장 및 저류시설 신·증설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 예산* 연차별 지원

* (도시침수 대응사업 예산 현황) ^{23년}1,541억 원 → ^{24년}3,275억 원 → ^{25년}3,208억 원

개정안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⁷⁾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하수도정비 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하수 범람으로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하수 범람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실익을 고려하여 심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자료)

□ 추진 배경

-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또는 우려) 지역에 하수관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습 침수지역 해소 등

□ 중점관리지역 지정(경과)

- ('12.4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마련
- ('13.2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하수도법 개정)
 - * 침수 피해 발생(또는 우려) 지역 등에 대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하수도 정비대책 추진
- ('13년~'24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총 210개 지역 지정

(단위 : 개소)

연 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정수 (완료)	210 (57)	21 (18)	11 (10)	11 (10)	10 (9)	11 (6)	12 (1)	12	26 (1)	21 (1)	38 (1)	21	16

*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이 시행 완료된 지역 수

- ('13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상 도시침수 대응사업* 지원
 - * 하수관 키우기, 빗물펌프장 신·증설, 저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침수원인 해소

□ 정비 사업 추진('13년~)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을 위한 국가지원(지자체 보조) 지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국 고	1,480,677	12,027	56,293	167,492	161,068	174,318	141,731	101,090	80,943	87,057	93,382	152,283	252,993

- 사업추진 체계/시행주체/법적근거 :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하수도법

비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23~)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30%, 시·군 60%	하수도법 제4조의3 및 제63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정현황(‘13~’24) : 210개 지역

구분	지정 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210	21	11	11	10	11	12	12	26	21	38	21	16
서울	2	-	-	-	-	-	-	-	-	-	2	-	-
부산	14	-	-	2	-	1	1	1	3	2	1	2	1
대구	4	-	2	-	-	-	1	-	1	-	-	-	-
광주	4	-	-	-	-	-	-	-	-	-	2	2	-
대전	3	-	-	-	-	1	1	-	1	-	-	-	-
세종	2	-	-	-	-	-	-	1	-	1	-	-	-
경기	26	3	1	2	-	1	1	1	1	2	4	7	3
강원	21	2	1	-	-	-	-	-	3	3	6	-	6
충북	21	-	-	-	-	2	1	4	2	4	6	-	2
충남	20	6	1	-	-	1	1	-	1	2	2	5	1
전북	5	1	1	-	1	-	-	-	-	-	1	-	1
전남	34	5	1	3	4	1	2	1	8	1	6	1	1
경북	28	1	2	2	2	-	2	1	5	5	5	2	1
경남	22	3	2	2	2	4	2	3	1	1	1	1	-
제주	4	-	-	-	1	-	-	-	-	-	2	1	-